

2020년도 청사현황 및 시설사용 안내

I. 청사현황

구분	내 용		
대지위치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(북정동 198-2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	
지역지구	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(혁신클러스터 용지)		
용도	교육·연구시설		
대지면적	전체면적(A)	가감차로 면적(B)	사업부지면적(A-B)
	69,026.00㎡	320.64㎡	68,705.36㎡
도로현황	북측 27m, 동측 23m, 서측 31m		
규모	지하 1층, 지상 7층		
주요시설물	본부/연구/교육시설, 교육생생활관, 격리시험동 기타 후생복지 및 공통시설		
연면적	42,399.16㎡	지하층	148.81㎡
		지상층	42,250.35㎡
건축면적	16,972.95㎡		
건폐율	24.70% (법정 : 70% 이하)		
용적율	61.19% (법정 : 500% 이하)		
구조	철근콘크리트조		
최고높이	36.47m(FH : 90.25) / 7층 바닥 : 30.25m		
외부마감	테라코타 패널, 접합강판, 로이복층유리		
주차대수	384대 (법정 : 190대 이상)	옥외 주차	291대
		옥내 주차	79대
		장애인 주차	14대
조경면적	30,607.34㎡(대지면적의 44.43%) (법정 : 대지면적의 15% 이상)		
공개공지면적	4,892.31㎡(대지면적의 7.10%) (법정 : 대지면적의 7% 이상)		

○ 동별 면적 개요

(단위 : m²)

구분		본부/연구/교육동 (지하1층, 지상8층)			교육생활관 (지하1층, 지상5층)	격리시험동 (지상2층)	합 계
		본부시설	연구실험시설	교육실습시설			
B1				84.66 (기계실)	148.81 (기계실)		233.47
1F	구분	3,284.00 (후생복리시설)	1,267.63 (후생복리시설)	3,200.64 (교육시설)	665.60 (복지시설)	2,398.08 (연구시설)	10,815.95
		1,997.67 (기계/전기실)	2,484.15 (주차장)		22.66 (경비실)		4,504.48
	소계	5,281.67	3,751.78	3,200.64	688.26	2,398.08	15,320.43
2F		974.33 (로비)	3,237.61 (연구시설)	1666.16 (교육시설)	670.60 (교육생숙소)	312.40 (연구시설)	6,861.10
3F		464.60 (휴게시설)	2,728.51 (연구시설)	2,473.50 (교육시설)	667.96 (교육생숙소)		6,334.57
4F		1,423.71 (업무시설)	2,620.82 (연구시설)	1,841.25 (교육시설)	667.08 (교육생숙소)		6,552.86
5F		1,448.12 (업무시설)	1365.95 (연구시설)	169.60 (교육시설)	667.08 (교육생숙소)		3,650.75
6F		1,443.95 (업무시설)	324.43 (연구시설)				1,768.38
7F		1,420.30 (업무시설)					1,420.30
8F		257.30 (업무시설)					257.30
합 계		12,713.98	14,029.10	9,435.81	3,509.79	2,710.48	42,399.16

II. 시설 사용

1. 개방대상 시설

공단의 개방대상 시설은 축구장 1면, 배드민턴장 2면, 테니스장 2면, 족구장 2면에 한함(출입가능시설은 생활관 1층 화장실에 한함)

가. 종류 및 명칭

구 분		면적(m ²)	실수(개수)
체육시설물	축구장	4118.19	1면
	배즈민턴장	1705.45	2면
	족구장	712.25	2면
	테니스장	1135.61	2면

나. 소재지 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(북정동)

2. 개방시간

구 분	토.일요일	공휴일	비 고
개방시간	오전 06:00 ~ 일몰시	오전 06:00 ~ 일몰시	주중은 교육생사용으로 인해 주말만 사용가능 (야간조명 없음)

※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신정·설·추석 연휴기간, 공단행사·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3. 사용방법

가. 공단 체육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

나.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사용 7일전까지 **사용신청서(별지 1호 서식)** 제출 및 **사용료** 입금을 하여 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정한다.

※ 특정 동호회의 장기간 독점 배제를 위해 신청은 **사용(예정)일로부터 30일 이내**에 한하며 신청순으로 한다

다. 공단은 체육시설물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7일전까지 **사용료**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한다.

※ 입금 계좌번호 : 중소기업 334021611010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4. 사용료 산정기준

가.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(2013.05.06 조례 제644호)를 기준으로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<체육시설 사용료>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토.일.공휴일	비 고
테니스장, 족구장, 배드민턴장	3시간	5,000	코트당
축구장	2시간	40,000	

나. 체육시설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국가보훈대상자, 유공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), 장애인, 노인 : 50/100
- ② 그 밖에 이사장(운영지원실장)의 승인을 받은 경우 : 50/100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- 알림마당 - 체육시설물 예약 - 체육시설물 사용수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